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0. 12. 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85호로 2020년 11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영등포구 한시기구(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미래 도시 영등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 존속기한 개정(안 부칙 제2조)

-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3조

나. 입법예고 결과(2020. 10. 29. ~ 11. 3.): 의견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심사결과: 원안 동의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금융특구 및 의료특구 사업, 교육 정책 사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등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1년 연장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위배되지 않으며, 영등포구 미래 성장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갖기 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 ④ 생략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0. 12. 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86호로 2020년 11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범위를 재정비하여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 추진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사업의 시행범위 확대(안 제7조)

나.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8조, 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2021년도 예산 편성

다. 기 타

- 입법예고 결과(2020. 11. 2. ~ 11. 5.): 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심사결과: 원안 동의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영등포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조에서 후생복지사업에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소속공무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을 추가하고,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범위를 각 호의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1조에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조례의 적용 범위에 대한 심의를 추가하였음.

○ 검토결과

- 「지방공무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복지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 및 운영지침에 따른 적절한 개정안으로 보임.
- 또한, 코로나19 등 각종 현안으로 소속공무원들의 건강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고 업무 피로도가 높아진 현 상황에서,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들의 후생복지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공무원법

- 제77조(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튜디오 운영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0. 12. 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튜디오 운영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87호로 2020년 11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우리구 최초로 조성된 스튜디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소통의 활성화와 구민 참여 프로그램 제작 등 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스튜디오 시설을 규정(안 제3조)

다. 스튜디오 사업을 규정(안 제4조)

라. 사용신청 및 허가 등을 규정(안 제5조)

마. 사용허가 제외, 사용정지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7조)

바. 사용자의 의무, 사용시간 등에 관한 규정(안 제8조~제9조)

사. 사용료에 관한 규정(안 제10조~제11조)

아. 시행규칙을 규정(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 협의사항

- 1)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 2)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
- 3) 행정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개선 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2020. 9. 24. ~ 10. 14.)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영상정보 시대를 맞아 영등포구에 스튜디오(『스튜디오 티움』, 영등포구보건소 지하 1층)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튜디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구성은 총12개의 조문과 부칙, 별지 4종, 별표 1개로 이루어져 있음.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는 스튜디오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스튜디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구정홍보 관련 미디어 콘텐츠 제작, 구민이나 구에 소재,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스튜디오 사용 허가 등 사업에 대하여 정함.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스튜디오의 사용 신청 및 허가사항, 허가 제외, 허가 취소나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에서는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설과 장비 등이 파손될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였음. 다만 안 제8조제2항의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구청장은 스튜디오 사용 중 안전수칙 위반 등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설과 장비 등이 파손될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로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위하여 의무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됨.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이용자의 의무) ① ~ ② 생략

- ③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이용자의 원상복구 의무)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③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개방공간의 시설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이용자는 원상복구 의무를 지며, 손해배상 등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천안시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입주 작가 준수사항)

1. 생략
2. 스튜디오 내의 제반시설 및 자료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안 제9조는 사용시간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불가피한 사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환받을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보건소 지하 1층에 구정 홍보를 다변화하기 위하여 조성한 스튜디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설을 구민 등에게 개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이 없으며, 스튜디오에서 구민들이 1인 영상물 제작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등포구민의 문화 향유 욕구 충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구청 청사의 개방공간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시설 관리 업무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인력 및 청사 보안, 예산 수반사항 등 체계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구민과 함께하는 스튜디오 틱옴 현황

- 사업목적: 넘쳐나는 미디어시대 1인 미디어 활성화와 색다른 문화 공간 확대를 위해 추진.

- 사업개요
 - 기 간 : 2019.12.~2020.03.
 - 장 소 : 영등포구보건소 지하 1층
 - 사업내용 : 일반사무공간을 활용한 스튜디오 구축
 - 소요예산 : 300,000천원(전액: 서울시 특별교부금)

- 사업추진 내용
 - 위치: 영등포구청 보건소 지하1층
 - 시설: 총 87.12㎡ [스튜디오(68.62㎡) 조정실 (18.5㎡)]
 - 장비
 - 스튜디오: 대형 LED(200인치) 스크린, 저발열 LED조명, 4K 카메라
 - 조 정 실: 생방송, 녹화, 편집 시스템 (음향, 조명 조정 시스템포함)

- 사업성과 및 효과
 - 200인치 대형 LED 디스플레이 설치 다양한 콘텐츠의 제작 가능
 - 4면 활용 가능한 스튜디오 다양한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가능
 - 저발열 LED 조명 설치 원활한 제작환경 조성
 - 4K 제작 시스템 완비
 - 다양한 SNS채널(유튜브, 페이스북 등)과 양방향 소통 플랫폼(Zoom 등)을 통한 다매체 동시 생방송 가능
 - 1인 미디어를 제작하는 시민들의 활용도 증대

○ 관련 사진



□ 스튜디오 특움은

★ 온택트(On line & tact) 시대의 꽃이 될 것입니다.

-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 문화 행사는 물론 함께하는 공유의 장이 될 것입니다.
- 주민들이 모이고 소통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마을미디어 등)
-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제작됩니다.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0. 12. 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88호로 2020년 11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주민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신규 확충된 공공체육시설의 주요 현황 및 사용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설치 관련 별표1 주요시설 변경 및 추가

(안 제3조 별표1)

나. 체육시설 사용료 관련 규정 별표3 사용료 신설(안 제8조 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기 타

- 입법예고 결과(2020. 9. 3. ~ 9. 23.): 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심사결과: 원안 동의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민의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신설된 양평1유수지 생태체육공원과 안양천 체육시설 등 공공체육시설을 현행화하고 사용료 감면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5조에서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정비하고
- 안 제9조 제1항과 제3항에서 축구장을 기존의 대림운동장에 신설된 안양천체육시설 축구장을 추가하고,
- 사용료 감면대상을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 장애인체육회 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 별표1의 영등포구 체육시설과 별표3의 체육시설사용료에 신설된 안양천 체육시설과 양평1유수지 시설을 신설하였음.

○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 설치된 구립 체육시설들을 추가하여 해당 조례의 목적인 “영등포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에 이바지 함”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상위 법령에 어긋남이 없고 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되며,

시행에 앞서 구민들이 체육시설 사용 시 불편이 없도록 체육시설 사용료 및 감면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다. 삭제 <2016. 8.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0. 12. 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89호로 2020년 11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우리구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관광해설사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관광해설사 선발, 해설사증 발급, 직무,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8조)

라. 관광해설사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관광해설사 해촉 및 포창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바.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나. 협의사항

- 1)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 2)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
- 3) 행정규제심사 결과: 신설 · 강화 되는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개선할 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2020. 10. 15. ~ 11. 4.)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총 13개의 조문과 부칙, 별표 1종, 별지 1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관광해설사 운영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관광해설사의 자격 및 선발에 관한 사항과 해설사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

- 안 제6조에서 관광해설사의 구체적인 직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관광해설사에 대한 전문지식 등 직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과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는 관광해설사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해설사의 선발과 운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확하게 안내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지역관광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새로운 수요 창출 등 문화 관광사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이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관광진흥법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제57조의5(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인원, 평가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7의4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선발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의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이론 및 실습 평가항목 각각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각각의 평가항목의 비중을 곱한 점수가 고득점자인 사람의 순으로 선발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활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와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및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실적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